#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31 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전용기·박지원·임광현

송옥주 · 민형배 · 임호선

이소영 • 이용선 • 윤종군

박상혁・박 정・진성준

서영교 · 정태호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.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,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(안 제328 조제1항 삭제).

법률 제 호

#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8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28條(親族間의 犯行과 告訴)	第328條(親族間의 犯行과 告訴)
① 直系血族, 配偶者, 동거친족,	<u>&lt;</u> 삭 제>
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	
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	
<u>한다.</u>	
② · ③ (생 략)	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